



www.seoul.go.kr
제 3249호
2014. 8. 18.(월)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규 칙]

제399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자 치 법 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3990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

2014년 8월 18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1조제1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경제진흥실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복지정책관·복지정책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복지건강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, 복지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, 희망복지지원과장·어르신복지과장·장애인복지정책과장·장애인자립지원과장·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건강증진과장·식품안전과장·생활보건과장·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문화정책과”를 “문화체육정책관·문화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, 문화체육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문화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, 문화예술과장·역사문화재과장·한양도성도감과장·체육진흥과장·관광정책과장·관광사업과장·문화산업과장·디자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

- 관으로, 공공디자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.
- ③ 제2항의 문화체육정책관, 관광사업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 - ④ 문화체육정책관은 문화정책 수립, 문화기반 조성, 시민문화활동 지원, 문화재 보존, 한양도성 보존·관리,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보좌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 주요 시정분야의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자 개방형 직위를 확대 지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 - 가. 개방형 직위 규정 (안 제6조, 제11조, 제15조)
 - 대상직위 : 여성가족정책실장, 경제진흥실장, 문화체육정책관
 - 나.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조정 (안 제12조, 제15조)
 - 복지건강실 : 복지정책관 관련 규정 삭제
 - 문화관광디자인본부 : 문화체육정책관 신설



기관의 장

선
람

공
람
